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435
----------	-----

제출년월일 : 2001. 6.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충 무 과

제안이유

-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안시 입법예고 실시(안 제3조).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행정심판
 5. 지방시형
 6. 정보화관련제도
 7. 기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 입법예고의 예외(안 제4조).
- 입법예고문 작성 및 입법예고 방법(안 제5조 및 제6조).
- 의견제출 및 처리(안 제9조).
-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정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정조례안 : 불 입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발췌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치법규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교육규칙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행정심판
5. 지방시형
6. 정보화관련제도
7. 기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제4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예고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문은 별지서식에 의거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교육감은 입법예고문을 충청북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도보외에도 신문, 방송,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충청북도교육청 회보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8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열람 및 복사) ①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요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청회) ①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 방법으로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예고사항의 확대 실시) 제3조의 입법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입법안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호

○○○조례(규칙)를 제정(또는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1. 조례(규칙)명 :

2. 제정(또는 개정·폐지) 취지 또는 이유

3. 주요내용

가.

나.

다.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용지를 세로 작성한 것)를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설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5. 공청회 개최 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 소 : ○○○

다. 공청사항 : 1)
2)
3)

라. 발언자수 : ○○인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월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충청북교육감(참조 : ○○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포함한다)

※ 필요한 경우 입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행정절차법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 포함여부가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5602호 1997. 12. 31.)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361-703 /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전화 (043)290-1229 / 전송(043)292-1525
 의사과 과장 이상기 의사담당 김왕년 담당자 임제혁

문서번호 의사 81433 - 1영

시행일자 2001. 6. 23.

(공개여부) 공개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2001. 6. 23.	결재		
	번호	26911			
처리과			공람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목 의안이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6. 23.)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129-1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원안가결
129-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9-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
129-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29-5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불임 : 의안 각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장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28일

충청북도교육청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902,507,426,740원, 세출결산액은 783,863,336,37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9,794,056,62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8,782,664,750원, 국고보조금잔액은 67,369,000원으로서 총 118,644,090,37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출 건 수 : 1건 ○ 지출결정액 : 28,468,890원 ○ 지 출 액 : 28,468,890원 ○ 잔 액 : 110원 ○ 지 출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 확정에 따른 구상금 28,468,890원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p>○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안</p>	<p>○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안시 입법예고 실시 (안 제3조)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행정심판, 5. 지방시험, 6. 정보화관련제도 7. 기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p> <p>○ 입법예고의 예외(안 제4조)</p> <p>○ 입법예고문 작성 및 입법예고 방법(안 제5조 및 제6조)</p> <p>○ 의견제출 및 처리(안 제9조)</p> <p>○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p>
<p>○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p>○ 공공시설 위탁관리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외의 자에게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p> <p>○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및 행정사무 간소화 (안 제7조) - 공유재산심의범위 확대 · 필요할 경우 공정이 50%이상 건축된 건물의 공유재산 확정 심의 - 공유재산 심의 생략 규모 조문 정리 ·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대장가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p> <p>○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임대료율의 탄력적 적용(안 제23조) - 일 반 재산평가액의 5% → 5%이상 - 공공용 재산평가액의 2.5% → 2.5%이상 - 경작용 재산평가액의 1% → 1%이상 등으로 정함</p> <p>○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집중지역 분산효과 (안 제23조) -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 이전시 대부 요율 인하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p> <p>○ 전세권 조항 신설(안 제25조의 2)</p>